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대한건의안 심사보고서

1992. 6. 15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류명희 의원의 11명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 6. 11

· 회부일자 : 1992. 6. 11

다. 상정일자 : 제79회 임시회

· 제1차 산업위원회 (1992. 6. 15)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류명희 위원)

가. 제안이유

· 농촌에서 수도작 경작의 관수방법으로 저수지의 동리구역이 아닌 양수시설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개량계의 경우 농지개량 조합비보다 현격히 과다 부과되므로 다같은 국가 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된 입장에서 조합구역과 향편을 유지하여 줄이 타당하게 느껴져 제안을 하게됨.

나. 주요골자

· 농지개량조합 구역은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합비를 10a당 5kg만 조합원이 부담하고 이외분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 농지개량계 계비의 경우 지난해 일부지역에서는 10a당 42kg이 부과된 지역도 있어 도평균 10a당 7.9kg을 동리자들이 부담하며 수해범위에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할려고 해도 양수장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조합측에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개량계의 물리구역에 대하여도 국고지원 대책 또는 조합가입의 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야할것임.

3. 질의 및 답변요지 : " 없음 "

4. 토 톤 요 지 : " 없음 "

5. 수정안의 요지 : " 없음 "

6. 심 사 결 과

○ 건의문안 만장일치 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음 "

8. 심사보고 첨부서류

○ 농지개량계 운영개선에 관한 건의문(안) 1부.

○ '91년도 시군별 농지개량계 (양수장) 조직 및 운영 현황 1부.